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코레이트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코레이트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koreit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4년 02월 0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02월 2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oreitasset.com) 및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 제 1 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 **[참고] 펀드 용어정리**

##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

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코레이트셀렉트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이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02.08.

##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코드: DZ123)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코레이트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90% 이하**를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금리변동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1.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채권 등(전단채, CP 외)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2. 투자전략</p> <p>① 이 투자신탁은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조건부채수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유동성(환금성)을 확보하고,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성을 낮추면서 비교지수(Call 지수)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p> <p>② 환매조건부채수 운용전략은 신용위험이 없는 국고채, 통안채 또는 특수채 등을 담보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금리가 형성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수를 주로 운용</p> <p>③ 단기금융상품 투자는 신용등급이 높고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A1등급 전단채와 CP 및 AAA등급 양도성예금증서(CD)에 주로 투자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투자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p> <p>④ 운용자산 평균 만기를 30일 내외로 구성하여 유동성 확보와 가격 하락 위험을 통제하고,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수익이 증가하는 포트폴리오 구성</p> <p>* 비교지수: Call x 100%</p> <p>※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KIS자산평가(<a href="https://kis-netkr/index.do">https://kis-netkr/index.do</a>)에서 확인할 수</p>
-------------------	--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단위: 연,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 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 비용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08%이내	0.150	0.080	0.960	0.150	24	40	58	95	2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270	0.200	0.490	0.270	28	58	89	156	352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04%이내	0.110	0.040	0.670	0.110	16	28	40	68	1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170	0.100	0.190	0.170	18	37	56	98	223

**투자비용**

- 주 1) '1,000만 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전환조건 달성 여부, 조환조건 달성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준일: 2023.10.31)
- 주 4)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5년차	설정일 이후 (%)
		2022/12/26~ 2023/12/25	2021/12/26~ 2023/12/25	2020/12/26~ 2023/12/25	2018/12/26~ 2023/12/25	
종류C	2023-01-09	-	-	-	-	4.27
비교지수		-	-	-	-	3.59
수익률 변동성		-	-	-	-	0.04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주 1) (CALLX100%)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자산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 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재헌	1964	본부장	7	9,049	-	-	-	-	32년 10개월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투자운용인력(채권운용본부)입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기준일: 2024.02.08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b>원본손실위험</b>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이자율 변동위험</b>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시장위험</b>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 운용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MMF 운용제한 미적용 위험</b>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와 다른 투자전략과 자산배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MMF 투자대상과 달리 환매조건부매수에 주로 투자하고, 듀레이션 제한과 같은 MMF 운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b>투자비중</b>	대량 설정이나 환매로 투자전략에서 정한 환매조건부매수와 단기금융상품 투자 비



	<b>변동 위험</b>	중이 변동하여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b>유동성 위험</b>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상환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상환연기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b>신용등급 하락 위험</b>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b>환매연기 위험</b>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b>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b>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코레이트셀렉트단기채증권투자증권[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b>매입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li> <li>•17시 이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li> </ul>	<b>환매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시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2영업일에 환매 대금 지급</li> <li>•17시 이후 :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3영업일에 환매 대금 지급</li> </ul>
<b>환매 수수료</b>	해당사항 없음		
<b>기준가</b>	<b>산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 좌수</li>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b>공시장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li> <li>•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li> </ul>	
<b>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을 부담합니다.</li> <li>•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li> <li>•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li> </ul>		

	<p>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사항은 투자 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b>전환절차 및 방법</b>	해당사항 없음																									
<b>집합투자업자</b>	코레이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74-6114/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itasset.com)																									
<b>모집기간</b>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b>모집 · 매출총액</b>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 좌)																								
<b>효력발생일</b>	2024년 02월 27일	<b>존속기간</b> 별도로 정해진 계약기간 없음																								
<b>판매회사</b>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참고																									
<b>참조</b>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집합투자기구의 종류</b>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판매수수료</td> <td>수수료 선취(A)</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td> </tr> <tr> <td>수수료 미징구(C)</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 rowspan="2">판매경로</td> <td>온라인(E)</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td> </tr> <tr> <td>오프라인</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td> </tr> <tr> <td rowspan="5">기타</td> <td>기관(F)</td> <td>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 조 제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td> </tr> <tr> <td>랩(W)</td> <td>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td> </tr> <tr> <td>고액(I)</td> <td>최초 납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개인연금(P)</td> <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퇴직연금(P2)</td> <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기타	기관(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 조 제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랩(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기타	기관(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 조 제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랩(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지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oreit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oreitasset.com)

##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DZ1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Z1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Z1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Z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Z1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Z1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Z1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Z1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Z1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DZ1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8244
수수료선취-온라인(A-E)	E8245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혼합자산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미해당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용어에 관한 사항은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10조 좌 (1좌당 1원)

이 투자신탁은 10조 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입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koreitasset.com) 홈페이지 참고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DZ1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Z1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Z1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Z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Z1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Z1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Z1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Z1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Z1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DZ1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8244
수수료선취-온라인(A-E)	E8245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내용
2022. 12. .	최초 설정 (예정)
2023. 12. 21	클래스 신설 (A, A-E),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2024. 02. 27	정기갱신,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하여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코레이트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9층(역삼동, 코레이트타워) 02-3774-6114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책임운용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혼합자산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재현	1964	본부장	7개	9,049억	-	-	-	-	32년 10개월
	<b>[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7. 01. ~ 2002. 05.: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 채권매니저</li> <li>2002. 05. ~ 2009. 05.: 도이치자산운용 운용본부장</li> <li>2009. 08. ~ 2016. 02.: 유경PSG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장</li> <li>2017. 08. ~ 현재 : 코레이트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li> </ul>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투자운용인력 (채권운용본부)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기준일: 2023.11.30

#### 나. 최근 3년간 책임투자운용인력의 변동 여부: 해당사항 없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혼합자산,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 자격

종류	매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30억 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개인연금(C-Pe)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기타	기관(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랩(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채권 등(전단채, CP 외)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환매조건부매수	9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채권	9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1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어음	6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과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li> </ol>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③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p>	
	<p>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b>③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b></p>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제한 ②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나. 투자제한 ②번, ③번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조건부매수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유동

성(환금성)을 확보하고,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성을 낮추면서 비교지수(Call 지수)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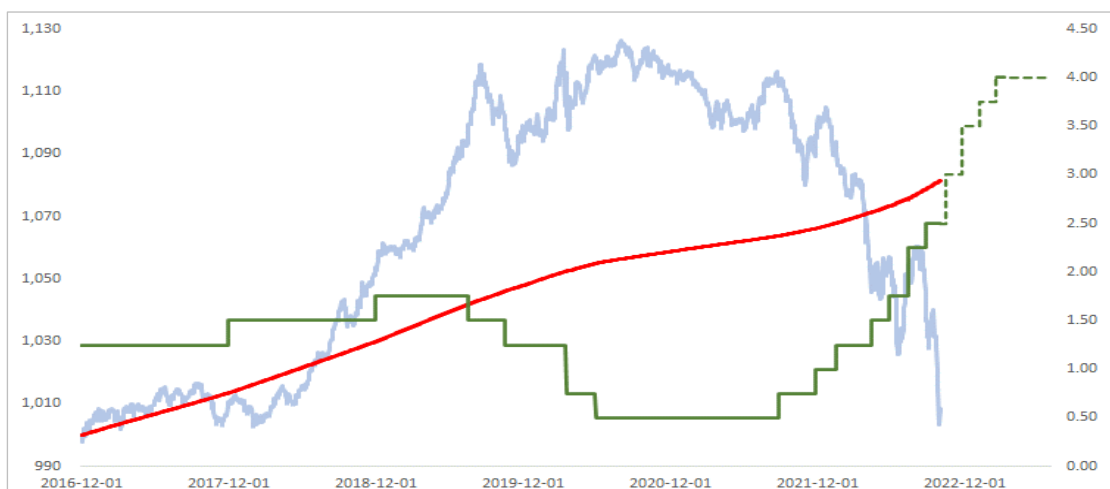
- ② 환매조건부매수 운용전략은 신용위험이 없는 국고채, 통안채 또는 특수채 등을 담보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금리가 형성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를 주로 운용합니다. 환매조건부매수 투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40%~90% 비중을 배정하여 금리상승을 반영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중 유동성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시기인 월말, 분기말, 연말 등에는 투자비중을 40%~90%로 구성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금리에 투자합니다.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기와 시중 자금이 풍부한 시장 환경에서는 환매조건부매수 비중은 30%~70%를 배정하여 초과 수익률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 ③ 단기금융상품 투자는 신용등급이 높고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A1등급 전단채와 CP 및 AAA등급 양도성예금증서(CD)에 주로 투자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투자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 ④ 운용자산 평균만기는 30일 내외로 구성하여, 유동성 확보와 가격 하락 위험을 통제합니다.
- ⑤ 모든 자산은 시가평가를 적용하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채권가격이 하락하지만, 주로 환매조건부매수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상승하는 이자수익을 꾸준히 반영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 **Repo란 무엇인가요?**

환매조건부채권매매(Sale&Repurchase Agreement, RP 또는 Repo)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Repo거래는 채권매매형태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기자금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채권 이외에 주식 및 부동산 등도 환매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Repo거래라고 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Repo시장은 채권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Repo거래는 채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Repo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채권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처럼 Repo시장은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국거래소 Repo시장의 거래기간은 1일, 2일, 3일, 4일, 7일, 14일, 21일, 30일, 60일, 90일 등 10개의 기본단위 기간으로 환매일은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각 2일째부터 91째 되는 날로 합니다. 2022년 10월 일평균 거래량은 155조 원으로 1일물 거래가 60~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화 시 초단기금리형 펀드와 채권 지수 비교**



- 채권형 펀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수익률은 상승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시기에는 수익률이 하락하여 고정자산으로써 채권투자 가치는 하락
- 초단기금리 혼합자산투자신탁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채권형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게 나오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하여 펀드수익률은 상승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위험요소		관리방안
시장위험	금리상승	▪ 편입자산 평균 만기를 1개월 내외로 관리하여,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신용위험	신용등급 하락	▪ 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우량 전단채와 기업어음 등을 편입하여 신용위험을 통제 ▪ 철저한 신용 분석을 바탕으로 편입 또는 보유 여부를 판단
	거래상대방 위험	▪ 환매조건부매수 시 담보를 국채, 통안채, 특수채 등으로 한정하여 담보 채권의 신용 위험과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한
유동성 위험	환매대응	▪ 환매조건부매수와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을 주로 편입하여 원활한 환매 대응

(3)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펀드런 등 유동성 리스크 확대 시 당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합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대량환매 규모 및 지속수준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를 정상(상시모니터링) / 요주의(상황분석, 전략 점검 및 조정) / 위기(운용전략 및 유동성 확보계획 수립, 점검, 보고) / 비상(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4단계로 구분하고, 유동성 체크 등 각 단계별 현상에 따른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비교지수: Call x 100%

※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KIS자산평가(<https://kis-net.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http://www.koreit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채권 등(전단채, CP 외)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내용
<b>원본손실위험</b>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이자율 변동위험</b>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시장위험</b>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 운용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내용
<b>신용등급 하락위험</b>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b>채무불이행 위험</b>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b>MMF 운용제한 미적용 위험</b>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와 다른 투자전략과 자산배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MMF 투자대상과 달리 환매조건부매수에 주로 투자하고, 듀레이션 제한과 같은 MMF 운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내용
<b>유동성위험</b>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상황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상환연기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b>투자비중 변동 위험</b>	대량 설정이나 환매로 투자전략에서 정한 환매조건부매수와 단기금융상품 투자 비중이 변동하여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b>순자산가치 변동 위험</b>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b>환매연기 위험</b>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b>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코레이트셀렉트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코레이트자산운용(주)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며, 동시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채권 등(전단채, CP 외)에 투자하는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6등급 중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며, 채권 및 어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 손실위험을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 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위험등급</b>	<b>상세 설명</b>
<b>1등급 (매우 높은 위험)</b>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2등급 (높은 위험)</b>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3등급 (다소 높은 위험)</b>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4등급 (보통 위험)</b>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5등급 (낮은 위험)</b>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6등급 (매우 낮은 위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li> <li>-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고위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개별펀드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은 운용전략 벤치마크(BM)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 시간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매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li> <li>-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li> <li>- 30억 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li> </ul>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li> <li>-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li> <li>-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li> </ul>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C-I)	최초 납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3) 판매수수료

종류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8% 이내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4% 이내

(4) 매입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①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7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 17시 이전 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오후 17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 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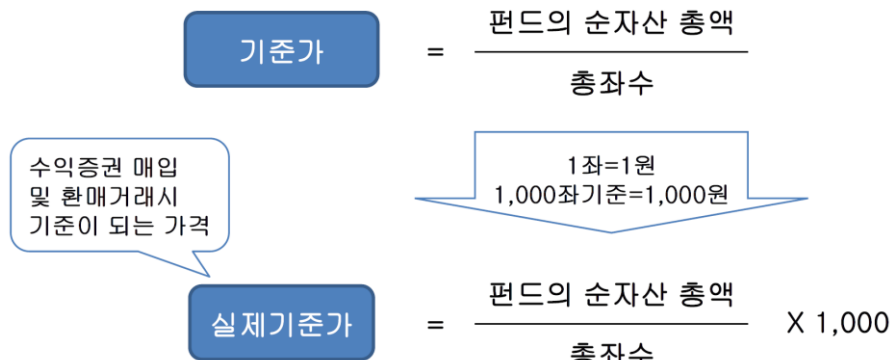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기준 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 수익증권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 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비상장채권(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신탁수익증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계산 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당해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부도채권	금융투자업규정 제7-35(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08%			
A-E	수수료선취-온라인(A-E)	0.04%			
부과기준		매입 시	환매 시	환매 시	-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펀드명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집합 투자업자	판매 회사	신탁업자	일반 사무관리	보수합계	개별기타 비용	개별 총 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따투자집합투자 기구보수 포함)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05	0.20	0.01	0.01	0.27	0.0024	0.2724	0.49	0.0097	0.2797	0.00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05	0.10	0.01	0.01	0.17	0.0024	0.1724	0.19	0.0099	0.1799	0.002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C-F)	0.05	0.06	0.01	0.01	0.13	0.0024	0.1324	0.00	0.0093	0.1393	0.004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0.05	0.00	0.01	0.01	0.07	0.00	0.07	0.00	0.007	0.077	0.002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객(C-I)	0.05	0.07	0.01	0.01	0.14	0.0024	0.1424	0.00	0.0095	0.1495	0.00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C-P)	0.05	0.15	0.01	0.01	0.22	0.00	0.22	0.00	0.0078	0.2278	0.002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C-Pe)	0.05	0.075	0.01	0.01	0.145	0.0017	0.1467	0.00	0.0089	0.1539	0.003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0.05	0.14	0.01	0.01	0.21	0.00	0.21	0.00	0.0081	0.2181	0.003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C-P2e)	0.05	0.07	0.01	0.01	0.14	0.0012	0.1412	0.00	0.0086	0.1486	0.002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05	0.08	0.01	0.01	0.15	0.00	0.15	0.96	0.15	0.15	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05	0.04	0.01	0.01	0.11	0.00	0.11	0.67	0.11	0.11	0.00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시

주 1) 기타 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22.12.26 ~ 2023.12.25)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년도(2022.12.26 ~ 2023.12.25)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투자 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1,000원)

클래스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7	56	86	151	34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8	57	88	155	3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7	35	54	95	21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	37	57	99	2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	27	42	73	16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4	29	44	77	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	14	22	39	8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	16	24	43	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4	29	45	79	17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	31	47	83	1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2	45	69	122	27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	47	72	126	2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	30	46	81	18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	32	49	85	1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1	43	66	116	26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2	45	69	121	2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4	29	44	78	17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	30	47	82	187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4	40	58	95	20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	40	58	95	204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	28	40	68	14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	28	40	68	148

주 1) 수익자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임니

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산출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

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이라 한다)
수령 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2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b>연금 외 수령 시 과세</b>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b>해지 가산세</b>	없음
<b>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li> <li>-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li> <li>-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li> <li>-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li> <li>-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li> <li>-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li> </ul>
<b>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시 과세</b>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b>연금 계좌 승계</b>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2022.12.26 ~ 2023.12.25)	신한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1기		
	2023.12.25		
운용자산	314,501,876,841		
유가증권	0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56,574,551		
기타 운용자산	314,445,302,290		
기타자산	1,558,182,668		
자산총계	316,060,059,509		
운용부채	0		
기타부채	11,629,964,582		
부채총계	11,629,964,582		
원본	302,989,551,114		
수익조정금	0		
이익조정금	1,440,543,813		
자본총계	304,430,094,927		
운용수익	8,402,649,058		
이자수익	8,350,045,920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손익	52,603,138		
기타수익	0		
운용비용	309,329,645		
관련회사보수	284,281,350		

매매수수료	7,317,425		
기타비용	17,730,870		
당기순이익	8,093,319,413		
매매회전율	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시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시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기 0원)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 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기 0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구분	당해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이외의 증권	2,908,590,394,293	0	0.	0	0	0.
합 계	2,908,590,394,293	0	0.	0	0	0.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1기		
	2023.12.25		
운용자산	314,501,876,841		
현금및예치금	56,574,551		
현금및현금성자산	56,574,551		
대출채권	314,445,302,29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6,100,000,000		
매입어음	288,345,302,290		
기타자산	1,558,182,668		
미수이자	1,558,182,668		
자산 총 계	316,060,059,509		
기타부채	11,629,964,582		

미지급운용수수료	24,410,479		
미지급판매수수료	52,830,956		
미지급수탁수수료	4,882,051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4,882,051		
수수료미지급금	5,595,954		
미지급이익분배금	11,537,363,091		
<b>부 채 총 계</b>	<b>11,629,964,582</b>		
<b>원 본</b>	<b>302,989,551,114</b>		
이익잉여금	1,440,543,813		
<b>자 본 총 계</b>	<b>304,430,094,927</b>		
<b>부채 및 자본 총계</b>	<b>316,060,059,509</b>		
<b>총좌수</b>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302,193,147,0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83,277,183,8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5,813,055,5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121,312,261,2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1,494,003,4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70,0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678,174,3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74,7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70,172,751		
<b>기준가격</b>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1.005.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003.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004.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1.005.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1,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1,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004.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1,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1,000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1기		
	2022.12.26 ~ 2023.12.25		
운용수익(운용손실)	8,402,649,058		
투자수익	8,350,045,920		
이자수익	8,350,045,92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3,457,930		
채무증권매매차익	1,203,048		
채무증권평가차익	52,254,882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854,792		
채무증권평가차손	854,792		
운용비용	309,329,645		
운용수수료	94,131,599		
판매수수료	152,498,665		
수탁수수료	18,825,543		
사무수탁수수료	18,825,543		
매매수수료	7,317,425		
기타운용비용	17,730,87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8,093,319,413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44.1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_운용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2/26~ 2023/12/25	10,200	10,201	961,164	988,718	658,971	681,046	302,193	316,055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종류형펀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9~ 2023/12/25	10	10	143,101	147,321	59,824	61,603	83,277	86,693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4~ 2023/12/25	60	60	121,401	125,503	25,587	26,407	95,813	99,901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12/26~ 2023/12/25	10,200	10,201	672,945	689,971	551,633	569,522	121,312	126,71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18~ 2023/12/25	81	81	236	237	236	238	0	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6/05~ 2023/12/25	1,000	1,000	23,446	23,708	21,952	22,216	1,494	1,531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1/16~ 2023/12/25	70	70	70	70	0	0	70	7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1/04~ 2023/12/25	0	0	1,325	1,366	647	668	678	707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12/07~ 2023/12/25	75	75	75	75	0	0	75	75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2/10~ 2023/12/25	0	0	456	469	186	191	270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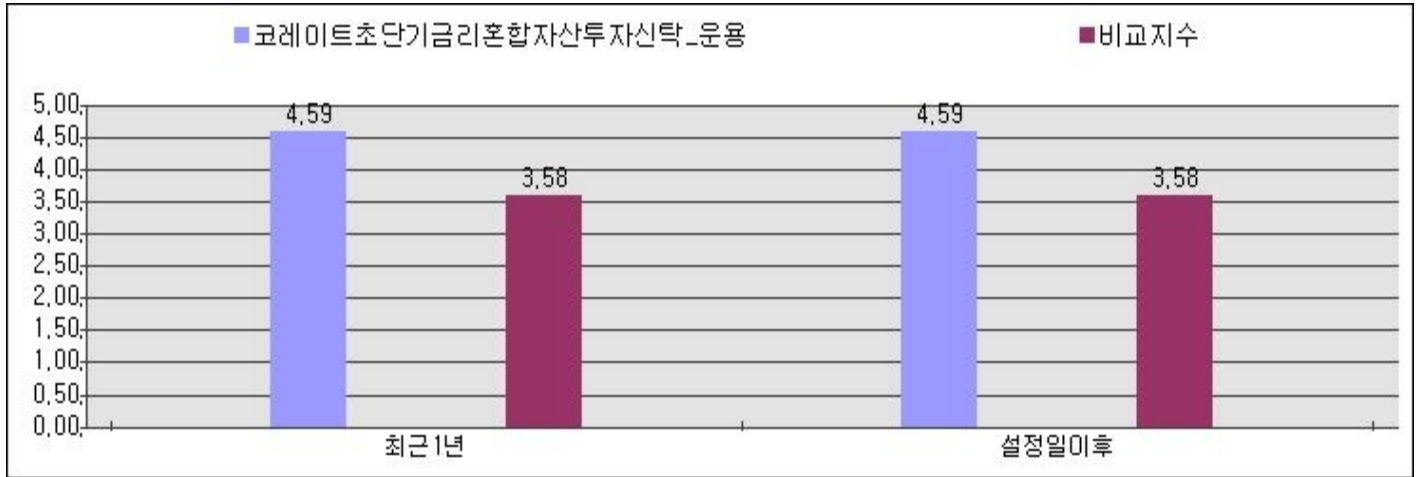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

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22/12/26~ 2023/12/25	2021/12/26~ 2023/12/25	2020/12/26~ 2023/12/25	2018/12/26~ 2023/12/25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2022-12-26	4.59	-	-	-	4.59
비교지수		3.58	-	-	-	3.58
수익률 변동성		0.05	-	-	-	0.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3-01-09	-	-	-	-	4.27
비교지수		-	-	-	-	3.59
수익률 변동성		-	-	-	-	0.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1-04	-	-	-	-	4.37
비교지수		-	-	-	-	3.58
수익률 변동성		-	-	-	-	0.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2-12-26	4.45	-	-	-	4.45
비교지수		3.58	-	-	-	3.58
수익률 변동성		0.05	-	-	-	0.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23-07-18	-	-	-	-	3.07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0.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C-I)	2023-06-05	-	-	-	-	4.37
비교지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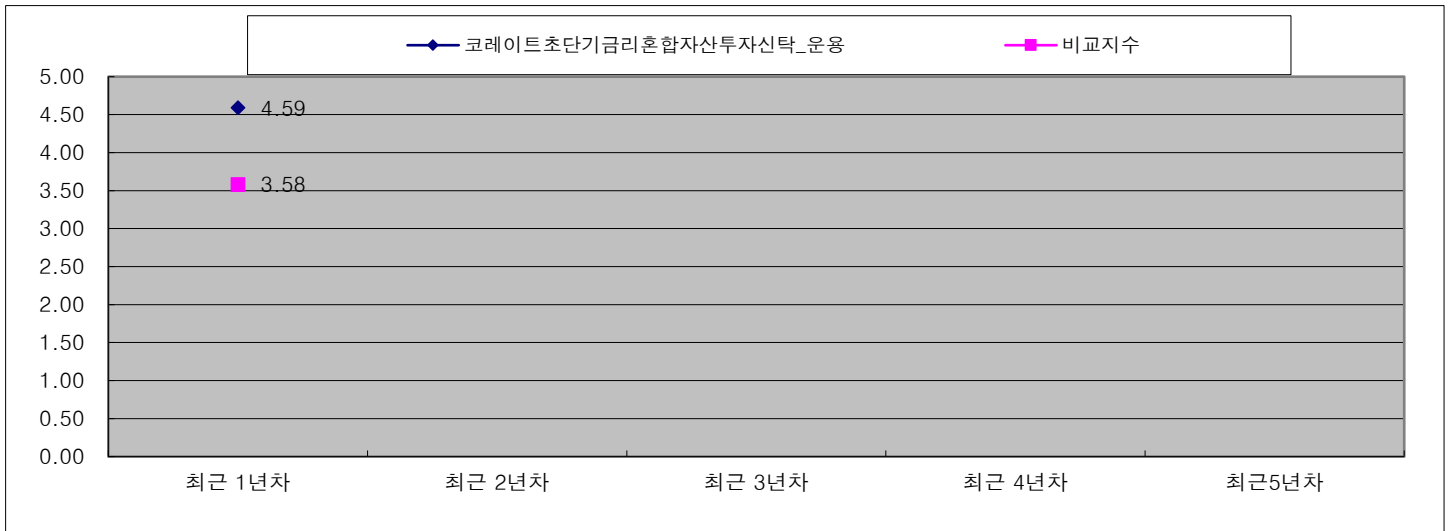
수익률 변동성		-	-	-	-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	4.47
비교지수	2023-11-16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0.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	-	4.40
비교지수	2023-01-04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0.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	-	-	4.42
비교지수	2023-12-07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0.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	-	-	4.23
비교지수	2023-02-10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0.14

주 1) 비교지수: (CALL X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	최근5년차
		2022/12/26~ 2023/12/25	2021/12/26~ 2022/12/12	2020/12/26~ 2021/12/25	2019/12/26~ 2020/12/25	2018/12/26~ 2019/12/25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	2022-12-26	4.59	-	-	-	-
비교지수		3.58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3-01-09	4.27	-	-	-	-
비교지수		3.59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1-04	4.37	-	-	-	-

비교지수		358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2-12-26	4.45	-	-	-	-
비교지수		358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23-07-18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C-I)	2023-06-05	4.37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23-11-16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3-01-04	4.40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2023-12-07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23-02-10	4.23	-	-	-	-
비교지수		-	-	-	-	-

(주 1) 비교지수: (CALL X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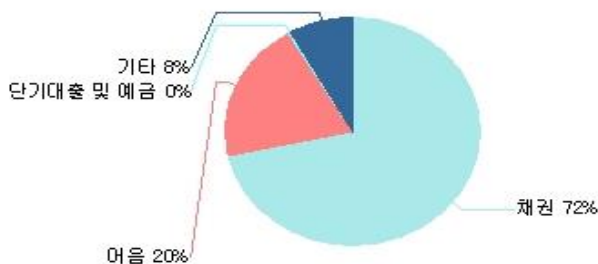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코레이트초단기금리혼합자산투자신탁(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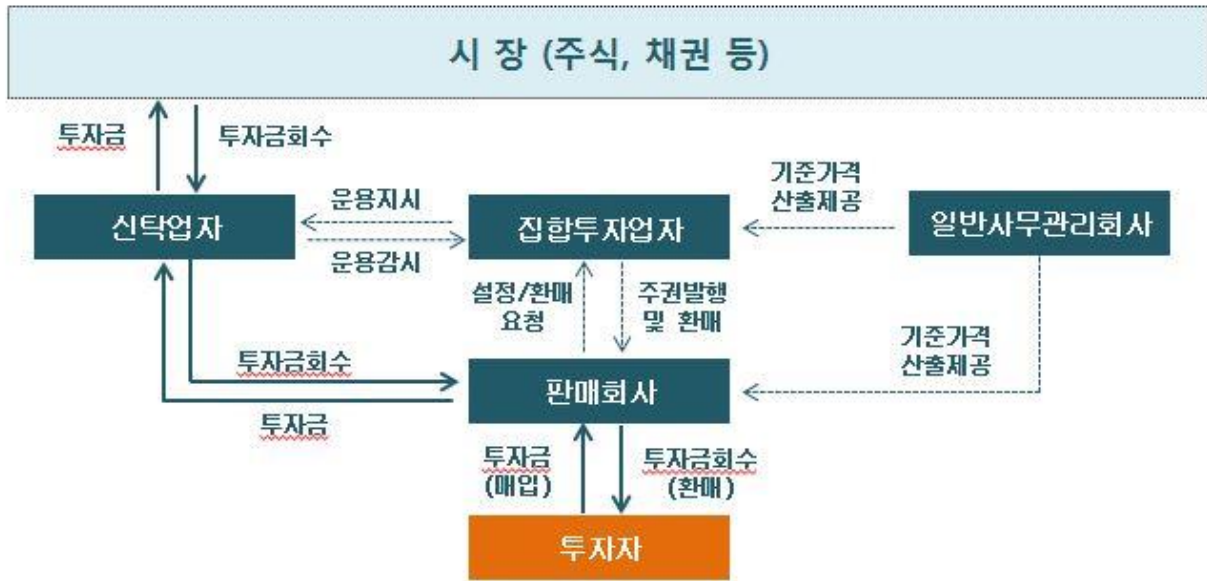
[2023.12.25 현재/단위: 백만 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0	226,094	63,799	0	0	0	0	0	0	57	26,110	316,060
	(0)	(71.54)	(20.19)	(0)	(0)	(0)	(0)	(0)	(0)	(0.02)	(8.26)	(100)
자산합계	0	226,094	63,799	0	0	0	0	0	0	57	26,110	316,060
	(0)	(71.54)	(20.19)	(0)	(0)	(0)	(0)	(0)	(0)	(0.02)	(8.26)	(1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코레이트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9층(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연락처: 02-3774-6114, www.koreitasset.com)
회사 연혁	-1987.11. 법인 설립 -1999.12. 자산운용업 등록,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으로 상호 변경 -2000.06. 투자일임업 등록 -2007.06. 마이애셋자산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2016.12. 코레이트자산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자본금	359억 원
주요 주주 현황	한국토지신탁 88.22%

### 나. 주요 업무

####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하나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37기 (22.12.31)	36기 (21.12.31)	항목	37기 (22.12.31)	36기 (21.12.31)
현금 및 예치금	14,069	8,020	영업수익	18,551	15,498
유가증권	14,546	8,455			
유형자산	2,471	3,469	영업비용	15,921	13,393
기타자산	3,439	2,091			
<b>자산총계</b>	<b>34,539</b>	<b>22,234</b>	영업이익	2,629	2,105
예수부채	2,179	3,357			
기타부채	2,345	2,679	영업외수익	306	1,045
<b>부채총계</b>	<b>4,525</b>	<b>6,036</b>	영업외비용	98	288
자본금	35,929	13,60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837	2,862
이익잉여금	5,141	2,608	법인세비용	304	253
자본조정	-15,323	-13	당기순이익	2,532	2,60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b>자본총계</b>	<b>30,014</b>	<b>16,197</b>			

**라. 운용자산 규모**

(단위: 억 좌, 기준일: 2024.02.08.)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합계
수탁고	721	1,674	4,773	761	146	6,416	1,109	5,079	<b>20,679</b>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b>회사명</b>	중소기업은행
<b>주소 및 연락처</b>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1588-2588
<b>홈페이지 주소</b>	www.ibk.co.kr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금융투자상품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b>회사명</b>	하나펀드서비스(주)
<b>주소 및 연락처</b>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04538) / 02-6714-4600
<b>회사 연혁 등</b>	2003. 04. 01. 설립

#####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3)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 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자산평가
<b>주소</b>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88 삼환빌딩 4층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4층 02-398-396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02-3215-1400
<b>홈페이지</b>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둡니다.
-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투자자총회의 소집

- 투자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투자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투자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투자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투



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②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 신탁의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 법 제193조제2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임의 해지 등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

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해소 및 관리 정책**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 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발생 사전 억제 정책**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 시 판매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집합투자구가 아닌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 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⑥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③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8)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koreitasset.com](http://www.koreitasset.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b>투자증권 거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li> <li>-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li> <li>-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li> </ul> </li> <li>▪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li> </ul>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 (1) 투자 주체: 집합투자업자(코레이트자산운용)
- (2) 투자 목적: 펀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 (3) 투자승인일자: 2022년 11월 4일
- (4) 투자집행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 예정
- (5) 투자 금액: 2억 원
- (6) 투자 기간: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유지. 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한까지
- (7) 투자금 회수계획: 의무투자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 (8) 의무투자 기간 경과 전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 ① 회수 가능 요건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에 따른 당연 해지사유 발생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자들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로 인한 투자신탁 해지
- 수익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투자신탁의 해지
-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 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 경과 전 집합투자업자 변경 시, 단, 의무투자기간의 잔존기간 투자 의무는 펀드를 이전 받는 운용사가 승계함

② 회수 절차 및 공시방법: 회수가 가능 요건 발생 시 사안별 회수계획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판매회사에 통보 후 회수

(9) 투자자 유의사항

- ①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의무투자기간 경과 전에도 위의 (8)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koreitasset.com](http://www.koreitasset.com))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금 환매 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 상 환매결과를 기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b>금융투자상품</b>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b>집합투자</b>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b>펀드</b>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b>투자신탁</b>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b>수익증권</b>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b>순자산</b>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b>증권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권,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b>개방형</b>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b>추가형</b>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b>종류형</b>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b>기준가격</b>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b>자본이익</b>	펀드 운용 시 주권 및 채무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b>배당소득</b>	펀드 운용 시 주권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b>보수</b>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b>선취수수료</b>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b>환매수수료</b>	펀드를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b>설정</b>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b>해지</b>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b>투자자총회</b>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b>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b>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b>원천징수</b>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